

제 363 호

1973. 4.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 6090

시보

차

례

◎ 조례

제 763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표창조례 3

◎ 교시

제 5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폐지) 11

◎ 직인 개자 11

◎ 사령 1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594

350

제 263 호

시

보 1973.4.18

12-3

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표창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4.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학점생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63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표창조례

제정 1973.4.14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특별시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와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여기서 "자"라 함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에게 수여한다.

제 3 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의 3종으로 한다.

제 4 조 (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행한다.

제 5 조 (공적상) 공적상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근무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당위원회 또는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전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제 6 조 (우등상) 우등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대외적으로 당위원회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 8 조 (표창의 규격 및 서식)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 1 호 내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유통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장사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폐 기타 부상을 수수할 수 있다.

제 10 조 (표창주천) ① 소주장 (본청의 각과장, 교육구청장, 고등학교장 및 소속기관장)은 표창대상자를 주천한 때에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이내에 표창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국장과 전항의 소속장을 표창할 때에는 서무과장이 전항의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이내에 표창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2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제 12 조 (표창시기 및 이정표창금지)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임시필요에 의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표장이 있다.

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종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 13 조 (주서) 표장을 받을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위임규정)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유통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될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제 363 호

시 보

1973.4.18.

12-5

제 1 호서식

(38 cm × 52 cm = 8 절)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 성 명

(표 창 문 안)

교 위 마크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위 원 회 교 육 감

12-6

제 363 호

시

보

1973.4.18.

제 2 호서식

(38 cm × 52 cm = 8 절)

제 호

상 장

소 속

직 성 명

(표 칭 문 안)

교 위 마 크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제 363 호

시

보

1973.4.18.

12-7

제 3 호서식

(32 cm × 52 cm = 8 절)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 성 명

(감 사 문 안)

교위 마크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위 원 회 교 육 감

12-8 제 363 호

시

보

1973.4.18.

공 적 조 서

본 적		근 무 기 간	년 월 일
주 소		수 공 기 간	자 지 년 월 일
소 속		파 거 대훈관계	
직 위 직 명		추천훈격	
성 명	(한자)	사정훈격	
생년월일	19 . . .		

공 적 사 항

제 363 호

시 보

1973.4.18 12-9

이 력 사 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조 사 담 당

직 직	위 명	
성 명		

1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12-10 제 363 호

시 보

1973.4.18

· 王 창 대 장

제 363 호

시 보

1973.4.18 12-11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폐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69.1.18)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를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3. 4. 14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노선변경(폐지)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총	점	비	고
기 존	소로	4		4	73	미아동 481-6	"	미아동 482-8	"		폐지
변경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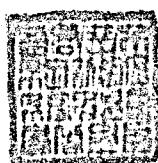
설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청에 보관

분 입 수 입 원 직 인 개 각

1. 영등포구수도사업소의 분입수입원 직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시행하였기 공고함

아 래

직 인 개 각



12-12 제363호

시 보

1973.4.18

사 명

◎ 1973. 4. 13

공무원교육원 서기관 박유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에 처함

◎ 1973. 4. 14

시설과 지방토목기사보 채수련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마포별원 지방보건기원보 민영관 환경순찰관 지방토목기사보 신홍섭
남부병원 파견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 이재인

연료과 73.5.10일까지

파견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 지방의무기좌 오무희
(겸 성동보건소 천호지소장)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3. 4. 18

단속과 지방토목기사 김도현

환경순찰관 근무를 명함

환경순찰관 지방토목기사보 신홍섭

단속과 근무를 명함

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 황정부

도시가스 사업소 근무를 명함

경남 지방행정주사보 차혁용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정명호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 1973. 4. 17

중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 이인옥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